2026. 10.

EU 유럽사법재판소, 짧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저작물성과 시사사건 보도 예외의 범위 판단 – '짧은 발췌' 제한은 허용, 경제적 이익 금지는 지침 위반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

1. 개요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26년 9월 3일 근둘 미디어(Gândul Media) 판결에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짧은 글의 저작물성과, 이러한 글을 온라인신문이 보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사회지침(2001/29/EC) 제5조 제3항 (c)[1]가 정한 시사사건 보도 예외의 적용범위를 판단하였다.[2] 이 사건은 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22줄 분량의 글을 온라인신문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부 전재(轉載)하면서 발생하였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일상적인 사회 관행에 관한 의견을 표현한 짧은 SNS 게시물도 지침 제2조 (a)의 '저작물(Work)'[3]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원국이 시사사건 보도와 관련한 저작물 이용을 '짧은 발췌'에 한정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을 둘 수 있는지였다.

사법재판소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짧은 글이라도 저자의 인격을 반영하는 정신적 창작의 표현이라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회원국이 시사사건 보도 예외를 '짧은 발췌'로 제한하는 것은 지침에 반하지 않지만, 그 이용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지침 제5조 제3항 (c)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2. 주요내용

1) 사실관계

원고 CY는 루마니아의 한 학교 교사이다. 원고는 2021년 9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개학을 맞은 학부모를 위한 작은 안내(Mic ghid pentru părinţi la începerea şcolii)"라는 제목으로 22줄 분량의 글을 게시하였다. 법무관의 의견에 따르면 CY는 이 글에서 유머러스하면서도 교훈적인 어조로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1) 정보사회지침(2001/29/EC) 제5조 제3항 (c): "reproduction by the press,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r making available of published articles on current economic, political or religious topics or of broadcast works or other subject-matter of the same character, in cases where such use is not expressly reserved, and as long as the source, including the author's name, is indicated, or use of works or other subject-matter in connection with the reporting of current events, to the extent justified by the informatory purpose and as long as the source, including the author's name, is indicated, unless this turns out to be impossible"

2) CJEU, Judgment of 3 September 2026, C-598/24.

3) 정보사회지침 제2조 (a)는 복제권의 대상으로 저작자의 '저작물(works)'을 규정함

선물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즉 문제된 게시물은 학기 초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관행에 관하여 현직 교사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 글이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2021년 9월 14일 기자 HO는 루마니아 회사 Gândul Media Network SRL이 발행하는 온라인 일간지 근둘(Gândul) 웹사이트에 "학년 초 교사에게 선물을 하려는 부모들에게 한 교사가 보내는 색다른 메시지[4]"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해당 기사에는 도입 문단에 이어 CY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22줄의 글이 그대로 게시되었다. 즉 문제의 글은 일부가 인용되거나 요약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전재된 것이다.

CY가 이러한 이용에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 또한 CY의 이름과 글의 출처는 처음부터 표시된 것이 아니라, 원래 페이스북 게시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의 형태로 사후에 추가되었다.

2) 루마니아 국내절차 및 선결재판 제청

CY는 저작권 침해의 확인과 함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및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부쿠레슈티 지방법원(Tribunalul București)은 2022년 4월 26일 문제된 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부쿠레슈티 항소법원(Curtea de Apel București)도 2023년 5월 3일 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에 CY는 루마니아 최고법원인 Înalta Curte de Casație și Justiție에 상고하였다.

최고법원은 먼저 문제의 페이스북 글이 정보사회지침 제2조 (a)의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또한 이 글이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지침 제5조 제3항 (c)의 두 번째 유형인 '시사사건 보도와 관련한 저작물의 이용' 예외의 범위가 문제된다고 보았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에 게시된 글을 온라인신문이 복제하는 것이 '시사사건'에 대한 보도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러한 보도가 반드시 공적 토론의 가능성을 수반해야 하는지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최고법원은 두 가지 질문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첫째, 소셜네트워크에 게시되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관행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글이 지침 제2조 (a)의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이다. 둘째, 시사적인 문제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 특히 저작물의 분량이 적은 경우에도 – '짧은 발췌'만 이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정한 국내법이 지침 제5조 제3항 (c)에 부합하는지이다.

3) 법무관의 의견

법무관 슈푸나르(Maciej Szpunar)는 사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두 번째 질문에 집중하였다.[5] 첫 번째

4) "An original message from a teacher for parents who are thinking of giving her gifts at the start of the school year"

5) 사법재판소는 사건마다 재판부 배정, 구두변론 여부, 법무관 의견을 받을지를 전체회의(réunion générale)에서 정한다. 이때 법무관에게 특정 질문만 다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질문에 관하여는, 저작물성은 저자의 고유한 정신적 창작이라는 의미의 독창성과 그 표현이라는 두 요건에만 달려 있으므로 글의 길이, 게시 장소, 특정 문학 장르에의 소속 여부는 무관하고, 요건 충족 여부는 전적으로 국내법원의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확립된 판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para[6]. 13).

(1) 시사사건과 보도의 개념

법무관은 '시사사건'을 보도 시점에 공중의 정보관심이 존재하는 사건으로 보는 기존 판례의 정의에 추가 요건을 붙이는 데 반대하였다. 예외의 목적이 언론의 정보제공권과 공중의 알 권리의 보호에 있고, 저작권 보호의 수준이나 침해의 정도는 보도대상 사건의 성격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para. 30-31). 교사의 게시물이 시사사건에 해당하는지는 국내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학교제도의 작동방식은 공중의 관심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의견이 이를 저해하는 관행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분류에 장애가 없다고 보았다(para. 32). 또한 '보도'는 사건에 관한 정보제공을 뜻할 뿐 상세한 분석을 요하지 않으므로 독자에게 의견표명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무관하며, 공적 토론은 표현의 자유 행사의 바람직한 결과일 뿐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하였다(para. 33-35).

(2) '짧은 발췌' 제한

법무관은 이 제한이 회원국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예외 자체가 임의적이어서 회원국이 그 잠재적 범위를 모두 활용할 의무가 없고, "정보 목적이 정당화하는 범위"라는 문언이 이용 범위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기 때문이다(para. 38-40). 나아가 저작물 전체의 복제·공중전달은 원래의 전달을 대체하므로 그 자체로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고 저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기에 적합하며, 인터넷에서는 저자가 통제력을 상실하고 누구든 보도를 내세워 예외를 남용할 위험이 크다고 하였다(para. 43-45). 다만 허용되는 발췌는 정보목적 달성에 충분한 길이여야 하고, 너무 짧아서 전체를 재현하지 않고서는 적절히 재현할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정보 목적상 필요한 한 전체 이용을 발췌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국내법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para. 48-49). 아울러 하이퍼링크로 원저작물 전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복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para. 50).

(3) 상업·경제적 이익 금지

법무관은 특히 '간접적' 이익의 금지를 문제 삼았다. 언론기관은 구독이나 광고를 통해 운영되므로 모든 보도에서 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고, 이를 금지하면 사실상 모든 언론기관에 예외가 적용될 수 없어 그 실효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para. 53-54). 또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동일시될 수 있는 직접적 이익과 달리, 언론활동의 수입으로 언론을 운영하는 간접적 이익은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저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지 않으므로 3단계 테스트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para. 55-56).

6) para.는 paragraph의 약어로, 단락 번호를 가리킴.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판결문의 단락을, '법무관 의견 para.'는 법무관 의견서(Opinion of Advocate General Szpunar, 2025. 12. 18.)의 단락을 의미함

이에 법무관은 ① 공중의 정보 관심이 있는 사건에 관한 정보제공에 저작물이 이용되면 시사사건 보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고, ② 짧은 발췌 제한은 발췌가 정보 목적 달성에 충분한 길이인 경우에는 허용되며, ③ '간접적'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금지하는 국내법은 지침에 반한다고 제안하였다(para. 57).

4)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1)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저작물성

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이 EU법의 자율적 개념이며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대상이 저자의 고유한 정신적 창작이라는 의미에서 독창적이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정신적 창작이 충분히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대상에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독창성은 저자의 자유롭고 창작적인 선택을 통하여 저자의 인격이 반영되는 경우 인정된다(para. 19-21).

사법재판소는 EU가 WIPO 저작권 조약 제1조 제4항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베른협약 제2조 제1항이 '기타 저술'(other writings) 을 포함하여 문학·예술저작물을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관행에 관한 저자의 의견을 표현한 SNS 게시물도 저자의 고유한 정신적 창작으로서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para. 23-24).

특히 글의 길이,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는 사실, 미리 정해진 문학 장르에 속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 판단과 무관하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이 규칙이나 기술적 고려 또는 제약 때문에 저자의 창작적 자유를 배제한 결과라면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para. 25).

국내법원은 저자가 텍스트를 작성하면서 자유롭고 창작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독창성은 단어의 선택, 배열 및 결합에서 나타날 수 있다(para. 26). 사법재판소는 최종 판단은 국내법원의 몫이라고 전제하면서, 제청법원이 제공한 정보에 비추어 CY가 문제된 글을 작성하면서 자유롭고 창작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para. 27).

이에 따라 사법재판소는 사회적 관행에 관한 의견을 표현한 SNS 게시물은 그것이 저자의 인격을 반영하는 정신적 창작의 표현인 경우 정보사회지침 제2조 (a)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para. 28).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법무관은 사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기존 판례의 일반적 기준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법무관 의견 para. 13). 이에 비해 사법재판소는 창작적 자유를 배제하는 제약이 있는 경우의 한계(para. 25), 단어의 선택·배열·결합이라는 심사기준(para. 26), 그리고 본건 글에 대한 잠정적 평가(para. 27)까지 제시하였다.

(2) 시사사건 보도의 의미

사법재판소는 두 번째 질문이 제청법원에서 제기되지 않은 가정적 질문이라는 CY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적법성을 인정하였다(para. 29-32). 이어 '보도(reporting)'란 시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해당 사건을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고, '시사사건(current event)'은 보도 당시 공중의

정보관심이 존재하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하였다(para. 36).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학기 초 교사가 SNS에서 학교 내 사회적 관행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것을 온라인신문이 이용하는 행위도 시사사건 보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사법재판소는 법무관 의견 para. 32와 34를 명시적으로 원용하면서 학교제도의 운영은 공중의 관심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도라는 개념은 수신자가 반드시 반응하도록 요구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para. 37-38).

따라서 이 부분은 법무관의 견해가 사실상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법재판소는 이를 주문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문제된 글이 구체적 사정에서 실제로 '시사사건'에 관한 것인지의 최종 판단도 국내법원에 맡겼다(para. 39).

(3) '짧은 발췌' 제한과 매우 짧은 텍스트

사법재판소는 정보사회지침 제5조 제3항 (c)가 해당 예외의 적용범위를 완전히 조화한 것은 아니므로 회원국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재량은 지침 자체의 요건, 비례원칙, 예외의 실효성, 제5조 제5항의 3단계 테스트 및 EU 기본권 사이의 적정한 균형에 의해 제한된다(para. 40-47).

지침 제5조 제3항 (c)는 시사사건 보도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분량에 명시적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용은 "정보목적이 정당화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보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para. 49).

사법재판소는 정보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항상 저작물 전체를 게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보목적 달성에 충분한 길이의 발췌로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para. 52).

나아가 예외는 3단계 테스트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사법재판소는 법무관 의견 para. 43을 원용하여 저작물 전체의 복제는 원래의 공개를 대체하여 수신자가 원문에 접근할 필요를 없애므로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고 저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발췌의 이용이 불가능한 매우 짧은 텍스트"의 경우는 이로부터 제외하였다(para. 53).

따라서 회원국이 시사사건 보도 예외를 짧은 발췌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제한은 비례적이어야 하고 예외의 실효성과 그 목적을 보장하여야 한다(para. 54).

매우 짧은 텍스트를 따로 취급한 것은 법무관 의견 para. 49[7]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법무관이 그러한 저작물은 필요한 경우 전체 이용을 발췌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국내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사법재판소는 이를 3단계 테스트에 관한 설시에서 예외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 또한 법무관이 결론에

7) 법무관 의견 para. 49: "… in the case of works so brief that they can be usefully reproduced only in their entirety, the domestic legislation … must allow the entirety of those works to be used, by treating them as extracts, if tha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informatory purpose pursued."

포함시킨 '정보목적 달성에 충분한 길이'라는 단서는 판결 이유(para. 52, 54)에만 반영되었을 뿐 주문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하이퍼링크 논거도 채택되지 않았다.

(4) 직접적 또는 간접적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익 금지

사법재판소는 시사사건 보도에서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직접적 또는 간접적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침 제5조 제3항 (c)의 문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보목적이 정당화하는 범위"라는 문구는 저작물 이용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para. 55).

이어 사법재판소는 법무관 의견 para. 53과 54를 명시적으로 원용하였다. 언론기관은 민주사회에서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 활동 주체를 감시하는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도 수행한다. 따라서 그러한 이익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예외의 실효성을 훼손한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거나 규율되지 않은 이러한 금지는 기본권 헌장 제17조의 지식재산권과 제11조의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해당 예외가 확보하려는 균형도 훼손한다고 하였다(para. 56).

이에 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이 시사사건 보도 예외를 짧은 발췌로 제한하는 것은 지침에 반하지 않지만, 그러한 이용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지침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para. 57).

이 점에서 사법재판소는 법무관의 제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법무관은 직접적 이익을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아 '간접적' 이익의 금지만을 지침 위반으로 보았으나(법무관 의견 para. 55-56), 사법재판소는 그러한 구별 없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익의 일반적 금지 자체를 배제하였다. 다만 그 논거로 간접적 이익에 관한 법무관의 의견(para. 53-54)을 원용하였을 뿐 직접적 이익에 관하여는 별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3. 판결의 의의 및 전망

이 판결의 첫 번째 의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짧은 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EU 저작물성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있다. SNS에 게시되었다는 사실, 글의 짧은 분량 또는 특정 문학 장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Facebook, X, Instagram,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짧은 텍스트도 저자가 단어를 선택·배열·결합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고 창작적인 선택을 하여 자신의 인격을 반영하였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저작물 개념에 관하여 이 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더하지 않고 기존 판례를 확인한 데 그친다는 평가가 있다. 나아가 결과물에 반영된 창작적 선택만을 기준으로 삼고 창작 과정에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성형 AI가 관여한 결과물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8)]

두 번째로 이 판결은 시사사건 보도 예외에 관한 회원국의 재량과 그 한계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회원국은 허용되는 이용을 '짧은 발췌'에 한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재량은 비례원칙, 예외의 실효성, 3단계 테스트 및 기본권의 적정한 균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예외를 사실상 무력화할 정도로 제한할 수는 없다. 이는 부분적으로만 조화된 예외 영역에서 국내 이행법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틀을 구조화한 것으로서, 같은 주제의 선결재판 제청이 여러 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 번째로, 보도의 상업적 성격만을 이유로 시사사건 보도 예외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도 중요하다. 현대 언론기관은 광고·구독 등 경제적 활동을 통해 운영되므로, 경제적 이익의 존재 자체를 예외 배제사유로 삼는다면 예외가 실제 언론에 적용될 여지는 크게 축소될 것이다. 사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지식재산권과 표현·언론의 자유 사이의 기본권적 균형의 문제로 파악하여 예외에 관한 논증을 기본권헌장에 뿌리내리게 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이 판결은 매우 짧은 저작물의 전체 이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았다. 사법재판소는 전체 복제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발췌 자체가 불가능한 '매우 짧은 텍스트'를 예외적으로 구별하였다. 따라서 이어지는 루마니아 소송에서는 문제의 22줄짜리 글이 이러한 매우 짧은 텍스트에 해당하는지, 일부 발췌만으로 정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이용이 비례원칙과 3단계 테스트를 충족하는지, 그리고 이름과 출처가 사후에 표시된 점이 출처표시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될지가 핵심적으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판결은 한편으로는 직접적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여 시사보도 예외의 실효성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짧은 저작물의 전체 이용 여부를 구체적 사안에서의 비례성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법리를 정교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짧은 SNS 게시물의 저작물성, 온라인 언론의 시사보도,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와 언론·정보의 자유 사이의 조정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하나의 판결에서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 저작물 이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8) Alina Trapova, "The Court of Justice Rules on Copyright Protectability of Facebook Posts and Exception for Reporting Current Events: Gandul Media (C-598/24)", Kluwer Copyright Blog, 21 September 2026 (EU Law Live 2026. 9. 10. 최초 게재).

참고자료

- CJEU, Judgment of 3 September 2026, C-598/2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2024CJ0598).
- CJEU, Opinion of Advocate General Szpunar of 18. 12. 2025, C-598/24(https://infocuria.curia.europa.eu/tabs/document/C/2024/C-0598-24-00000000RP-01-P-01-3389802/CONCL/313735-EN-1-html).
- Alina Trapova, “The Court of Justice Rules on Copyright Protectability of Facebook Posts and Exception for Reporting Current Events: Gandul Media (C-598/24)”, Kluwer Copyright Blog, 21 September 2026.